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30.

발 의 자 : 박덕흠 · 강대식 · 이현승
나경원 · 성일종 · 고동진
이종욱 · 김선교 · 서천호
구자근 · 박상웅 · 송석준
김소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·시·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, 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,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·시·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각 시·도의 행정구역 수가 의원정수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, 시·도의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.

예를 들어 지난 해 10월 기준 인구수 159만 5,873명인 충청북도의 의원정수는 31명인 것에 비해 인구 수가 더 적은 151만 683명의 강원도 의원정수는 44명이며, 각각 인구 수가 178만 950명과 172만 8,726

명인 전라남도과 전라북도는 행정구역 수가 많은 전라남도 의원정수는 55명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36명에 불과해 시·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이 광역의원 정수 기준인 인구 5만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, 이대로라면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의회에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, 인구·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·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.

또한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구 5만명 기준을 4만 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(안 제22조제1항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본문 중 “인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5만명 미만”을 “4만명 미만”으로, “5만명 이상”을 “4만명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경우
100분의 20
2. 제1호에 따른 조정을 하되,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의 총 정수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인구,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30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시·도의회 의원정수)	제22조(시·도의회 의원정수)
① 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	① -----
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	-----
의 자치구·시·군(하나의 자	-----
치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	-----
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	-----
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, 행정	-----
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	-----
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	-----
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	-----
말한다)수의 2배수로 하되, 인	-----다
구·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	음 각 호에 따른-----
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	-----
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	-----
다. 다만, 인구가 5만명 미만인	---. -----4만명 미만---
자치구·시·군의 지역구시·	-----
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	-----
고,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	-----4만명 이상-----
구·시·군의 지역구시·도의	-----
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.	-----.
<신 설>	1. 행정구역·지세·교통, 그
	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정
	하는 경우 100분의 20
<신 설>	2. 제1호에 따른 조정을 하되,

② ~ ④ (생 략)	<u>시·도별 지역구시·도의원</u> <u>의 총 정수 간 과도한 편차</u> <u>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</u> <u>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인구,</u> <u>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</u> <u>려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</u> <u>의 30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	--